

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건설관리과)

의안번호	478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3. 31.)
의 안 명	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2021년 기금 결산결과 반영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설치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성북구기금관리기본조례 제24조
- 2) 설치목적 :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- 3) 설치연도 : 2020년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

2) 기금사업의 개요

-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, 도시경관개선, 간판시범거리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중점 추진

다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변경 개요

1) 기금 변경사유

- 2021년도 기금결산 결과 반영
- 행정안전부 주관 「정치현수막 우선계시대 확충사업」 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로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

2)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

○ 2022년도 기금 조성액 (단위: 천원)

2021년도말 조성액(가)	2022년도 증감액			2022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계 나=(다)-라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
75,168	26,970	51,652	24,682	102,138

○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
기금총운용액	107,575	126,820	19,245

- 2022년 기정예산 107,575천원에서 126,820천원으로 증액 편성
 - 시설비(시설비및부대비) 24,682천원 신규 편성
 - 2021년 기금결산 결과반영

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 (단위 : 천원)

항 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7,575	126,820	(증) 19,245	
공공예금이자수입	270	270	-	
그외수입	0	24,682	(증) 24,682	신규 편성
기타수수료	16,000	16,000	-	
이행강제금	7,700	7,700	-	
과태료	3,000	3,000	-	
예치금회수	80,605	75,168	(감) 5,437	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-편성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7,575	126,820	(증) 19,245	
시설비 (시설비및부대비)	0	24,682	(증) 24,682	신규 편성
예치금	107,575	102,138	(감) 5,437	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

4) 2022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조성액	사용액	2022년말 조성액 (잔액)
126,820	24,682	102,138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예금이자수입 : 270 · 그 외 수 입 : 24,682 · 기 타 수 수 료 : 16,000 · 이 행 강 제 금 : 7,700 · 과 태 료 : 3,000 · 예 치 금 회 수 : 75,168 	-	=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비(시설비및부대비) : 24,68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3년도 이월(예치금) : 102,138

3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기금 결산을 반영하고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1) 단서조항에 따르면

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 예산보다 22.94%인 2,468만원이 증가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
-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임.
-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주관 ‘정치현수막 우선계시대 확충사업’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로 2,468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, 2022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억757만원에서 1,924만원 증액된 1억2,68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